

방범용 CCTV 설치장소 행정예고

2012년 3월 5일부 시행 예정인 거제시 불법 주·정차 견인보관소 설치와 관련 견인보관소 내 차량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자의 도주로 차단 및 신속한 검거를 위한 방범용 CCTV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『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『행정절차법』 제46조에 의거 불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거제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2년 2월 10일

거 제 시



1. 사업명 : 방범용 CCTV 설치
2. 시행청 : 경상남도 거제시
3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12.02.10 ~2012.03.02(20일간)
4. 공고방법 : 거제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geoje.go.kr>) 및 게시판
5. 설치장소
 - 거제시 고현동 1024 번지 견인보관소 내(신오교 인근)
6. 관련근거
 -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의2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)
 -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)
 - 공공기관의 CCTV 관리 가이드라인 제7조(사전의견수렴)

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-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
7. 촬영범위 및 시간 : 견인보관소 24시간 촬영

8. 관제장소 : 거제시청 교통행정과

9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제시청 교통행정과로 방문,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 등

다. 제 출 처 : 경상남도 거제시 교통행정과

라. 제출방법

- 우편 :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(고현동) (우편번호 656-720)
- 팩스 : 055) 639-3456

마.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바. 문 의 처 : 거제시청 교통행정과(☎639-3361)

사. 공청회 개최계획 : 없음

※ 붙 임 : 의견 제출서(서식) 1부. 끝.